

#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기획조정실

### 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월 20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 
(2023년 2월 1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#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관 강상기

나. 제안이유

- 서민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,600만원 미만 비영업용 소형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타 시도와 기준을 통일하고, 도 부채를 경감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,600만원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경상북도지역 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.

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#### 가.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\*에 따라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에서 1,600만원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는 면제함으로써,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북도 입장에서는 채권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\*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4538(2022.11.29.) : “1,000~1,600만원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·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, 시행시기 - '23. 3. 1”

#### 나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제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음

#### <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(채권의 매출대상 등)>

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,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등록을 신청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

- 금번 조례 개정은 제5조제1항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임  
<매출대상 및 매출기준(제5조제1항\* 관련)>

| 대상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출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<br>매출기준     | 개정<br>매출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자동차<br>신규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1,000cc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2/100   | —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1,600cc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” 4/100        | 4/1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2,000cc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” 8/100        | 8/1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비사업용 승합,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<br>(배기량 1,000cc 이상) | 취득세과표의 1.5/100 | ⇒ 1.5/100  |
| 2. 자동차<br>이전등록<br>(시·도만을<br>달리하는<br>변경등록은<br>제외한다) | 가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1,000cc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1/100   | —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1,600cc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” 2/100        | 2/1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2,000cc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” 4/100        | 4/1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비사업용 승합,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<br>(배기량 1,000cc 이상) | 취득세과표의 0.8/100 | 0.8/100    |

※ 채권발행액 = 차량가액 × 배기량별 요율

## 다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채권발행 증가로 인한 부채 확대와 차량가액 및 채권 할인을 급증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, 정부시책에 따라 전 시·도의 소형승용차 등록 채권면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, 채권발행에 따른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미사용 기금 축소로 효율적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
- 경북도의 1,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 건, 억원, 2021년 12월말)

| 구분 | 계  |     | 신규 등록 |    | 이전 등록 |    |
|----|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
|    | 건수 | 금액  | 건수    | 금액 | 건수    | 금액 |
| 누계 | 37 | 102 | 17    | 91 | 20    | 11 |

- 이에 따라 2023년 3월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, 2021년 자동차등록 관련 발행된 채권 중 3만 7천건, 102억원이 매년 감소되는 효과를 발생함

- 또한 2023년 3월 개정안 시행시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
(단위: 억원)

| 구분 연도       |          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세입          | ○ 채권매출   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510 |
|             | ○ 융자금회수 등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
|             | 소계(a)    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510 |
| 세출          | ○ 기금용자    | △42  | △42  | △42  | △42  | △42  | △210 |
|             | ○ 예치금 등   | △60  | △60  | △60  | △60  | △60  | △300 |
|             | 소계(b)    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102 | △510 |
| □ 총 비용(a-b) |       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

- 한편, 지역개발기금 미사용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
(단위: 억원)

| 연도  | 2017  | 2018  | 2019  | 2020  | 2021  | 2022 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예치금 | 3,583 | 3,676 | 3,443 | 2,466 | 2,706 | 4,052 |

- 이와 같이,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축소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져 경북도의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,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로 그 목적과 개선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 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